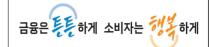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4.8.23.(금) 조간	배포		2024.8.22.(목)
담당부서	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권재순 (02-3145-7270)
		담당자	팀 장	김태훈 (02-3145-7260)

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시례 안내

- ④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

< 주요 내용 >

- ① '특별이익 제공'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 - 현행 「보험업법」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, 보험료의 대납,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.
- ② 앞으로 **금융감독원**은 **특별이익 제공이 과도**한 **경쟁을 유발**하고, 궁극적으로 **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**시킬 수 있는 만큼 **관련 검사** 및 **제재를** 보다 **강화**할 계획입니다.

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.

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,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.

③ 아울러, 「보험업법」에서는 **금품 등**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·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, 보험료의 대납,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만약, **금품 등**의 **제공을 제안**받거나 **인지**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 등을 통해 **적극 신고**해 주시기를 **당부**드립니다.

※ 동 연속기획 보도자료는 빈번하게 적발되어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,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 추진 배경

- □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(이하 'GA')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· 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(시리즈)로 공유·전파하고 있으며,
 - 지금까지 3회에 걸쳐 ^①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, ^②부당 승환계약, ^③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.
- □ 이번에는 연속기획 네 번째로 「보험업법」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'특별이익 제공'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
<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연속기획물 >

회 차	주 제 (보도일)	
1	작성계약(허위·가공계약)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·제재 방향('24.5.28.)	
2	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('24.6.25.)	
3	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('24.7.17.)	
4	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	

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행위

- □ (개념)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 - 현행「보험업법」에서는 일정 금액[min(연간 납입보험료×10%, 3만원*)]을 초과하는 '금품 제공', '보험료의 대납', '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'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으며, 이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 - *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(예: 헬스케어와 연계된 스마트워치 등 건강증진형 상품)의 경우에는 20만원

<참고> 관련 법령

□「보험업법」

제98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<u>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</u>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금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)
- 2.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
- 3.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
- 4.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
- 5.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
- 6.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
- 7. 「상법」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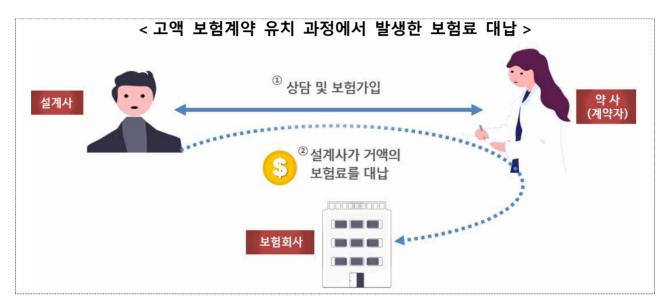
□「보험업법 시행령」

제46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) 법 제98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<u>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(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</u> 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)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

- □ (발생 효과)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·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 하고,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큽니다.
 - 형평성 저해: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모아진 재원(財源)을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행위로 계약자· 피보험자 간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합니다.
 - 과당경쟁 유발: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, 과도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모집질서를 훼손합니다.
 - 보험료 인상 등: 특별이익 제공을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의 불합리한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며,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
Ⅲ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

- ※ 최근 금감원 검사에 적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를 소개
- ① (보험료 대납)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*하는 행위가 적발 되었습니다.
 - * (예) 월납 초회보험료가 1,000만원인 연금보험에 대해 7,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



- ② (고가의 사은품 제공) 베이비페어,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3만원이 넘는 사은품*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.
 - * (예) 카시트, 유모차, 상품권 등



Ⅳ 위반 시 제재 양정기준 및 최근 제재 실적

- □ (제재 양정기준)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·부당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·신분제재 (「보험업법」 제86조 및 제88조 등)가 부과됩니다.
 - 아울러, 「보험업법」(제202조 제3호)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·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*하고 있습니다.
 - * 금감원은 「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」에 따라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

<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>

구	분	G A	GA 소속 임직원	GA 소속 설계사
조치 종	조ㄹ	등록취소, 업무정지(6개월 이내),	주의·경고·문책(임직원),	등록취소, 업무정지(6개월 이내),
	ᅙㅠ	주의·경고	해임권고·직무정지(임원)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근거 :	조항	법 제88조 제2항 제1호 및	법 제98조, 제134조 제1항,	법 제86조 제2항 제1호,
		제7호, 제98조, 제134조 제1항,	제136조 제1항	제98조, 제202조 제3호
		제136조 제1항	W1207 W1.9	M30±, M202± M3±

- □ (최근 제재실적) 지난 4년간('20~'23년)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(30~180일) 등이 부과되었고,
 -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,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(30~180일)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.

< 최근 4년간('20~'23년)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관련 제재현황 >

구분	기관 제재	임직원 제재	설계사 제재
조치 내역	등록취소: 2개사 180일 업무정지: 1개사 90일 업무정지: 1개사 30일 업무정지: 3개사 기관경고: 1개사	해임권고: 1명 직무정지: 2명 문책경고: 5명 견책: 1명 주의: 10명	등록취소: 4명 180일 업무정지: 9명 90일 업무정지: 7명 60일 업무정지: 1명 30일 업무정지: 184명 수사기관 고발: 16명

주1) '20~'23년(조치요구일 기준) 보험검사3국의 GA 지적사항 중 특별이익 제공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

주2)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(예: 업무정지 30일 & 해임권고 → 업무정지 30일 +1명, 해임권고 +1명)

Ⅴ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당부

-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,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,
 -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며,
 -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.
- ② 아울러, 「보험업법」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·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 -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, 보험료의 대납, 근거 없는
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
 - 만약,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<참고>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

- □ 보험회사·GA·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^{*}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 - *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접속 → '민원·신고' → '불법금융신고센터' → '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' → '신고하기'
- 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조치사례

회사명	조치요구일	위법 내용	
□□ 보험대리점	'21.7.7.	□□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甲 등 32명은 2016.7.15.~ 2019.6.28. 기간 중 'OOO통합종신보험' 등 1,026건(초회보험료 13억 3,970만원)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전OO 등 668명에게 42억 4,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. □□보험대리점에게는 업무정지(30일), 공동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및 주의,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(30~180일)가 부과되었다.	
스스 보험대리점	'20.7.29.	△△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乙 등 54명은 2016.5.31.~2018.11.30. 기간 중 'OOO어린이CI보험' 등 2,355건(초회보험료 5억 8,040만원)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<u>베이비 페어,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에게 3만원이 넘는 육아용품을 제공</u> 하는 등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계약자 문OO 등 1,897명에게 16억 5,57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. △△보험대리점에게는 기관경고, 대표이사에게는 주의,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(30~180일)가 부과되었다.	
◇◇ 보험대리점	′23.4.28.	◇◇보험대리점 前 소속 설계사 丙은 2014.10.31. 'OOO연금보험' 1건(초회보험료 360만원, 지급수수료 2,290만원)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◈◈◈◈◈(아파트)입주자대표회의(대표 김OO)를 대신하여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 총 700만원을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. 설계사 丙에게는 업무정지(30일)가 부과되었다.	

^{*}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'업무자료 - 검사·제재 - 제재관련 공시' 메뉴에서 제재내용 확인 가능

붙임2 관련 법령

□ 「보험업법」

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(생략)

-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(후략)

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 ① (생략)

-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<u>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</u> 2~6. (생략)
- 7.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- 제98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<u>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</u> <u>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</u>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금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)
 - 2.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
 - 3.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
 - 4.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
 - 5.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
 - 6.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
 - 7. 「상법」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
- 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(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)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4호,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1.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·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· 경고 · 문책의 요구
 - 2.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
 - 3. 임원(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.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)의 해임권고·직무정지
 - 4.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
- 제136조(준용) ① 국내사무소·<u>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</u>한다. 이 경우 "보험회사"는 각각 "국내사무소"·"보험대리점" 또는 "보험중개사"로 본다.
- **제202조(벌칙)**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1~2. (생략)
 - 3. <u>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(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)한 자</u>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(收受)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(후략)
- □「보험업법 시행령」
- 제46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) 법 제98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<u>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(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)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</u>